

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(제12조의5 관련)

1. 인력

- 가.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
- 나.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
- 다.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
- 라. 간호사 2명 이상
- 마. 임상병리사 2명 이상(1명은 폐기능검사 담당으로 지정)
- 바. 방사선사 1명 이상

2. 시설

- 가. 진료실
- 나. 엑스선(방사선)촬영실
- 다. 방음실
- 라. 임상병리검사실
- 마. 폐기능검사실
- 바. 다음의 장비를 갖추는 것
 - 1) 시력검사기
 - 2) 청력검사기(오디오체크는 제외한다)
 - 3) 광학현미경
 - 4) 원심분리기
 - 5) 냉장고

- 6)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엑스선 직접 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(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이 가능할 것)
- 7) 자동혈구계산기
- 8) 자동화학분석기
- 9) 자동혈액가스분석기
- 10)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 검사기(폐용적 및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가 가능할 것)
- 11) 심전도 검사기
- 12) 항산균 검사(도말, 배양 및 동정을 포함한다)에 필요한 장비
(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- 13) 심장초음파(심에코)검사기(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